2018년청년고용우수기업근로환경개선사업

가이드북

2018.06.22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뿌리산업지원센터

목차

- 1. 사업개요
- 2. 프로세스
- 3. 지원대상
- 4. 지원 규모 및 내용
- 5. 기업 규모 및 대상업종
- 6. 우대기업 구분
- 7. 신청절차
- 8. 제출서류 목록
- 9. 제출서류 상세내용
- 10. 제외기업
- 11. 유의사항

「2018년 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비	970백만원				
지원대상	청년 신규채용 2명이상 포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인천소재 중소기업				
	30개사 내외(* 청년 채용인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 2인이상 ~ 3인이하 : 1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규모	• 5인이하 : 20백만원 이내 지원				
	• 10인이하 : 30백만원 이내 지원				
	• 10인초과 : 4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기업 근로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비용 및 물품구입비용 지원				
모집기간	수시모집 (공고일~ 예산 소진시까지)				

○ 프로세스

	1. 사업공고 (IBITP)	- 사업공고
모집	2. 참여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bizok.incheo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평가	3. 평가 및 지원결정 (IBITP → 신청기업)	- 서류심사 (50%), 현장평가 (20%), 위원평가 (30%)
사업 수행	4. 선정공고 (IBITP)	-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사항에 의한 과제수행
	5. 비용완납 (선정기업)	- 총 소요금액〈기업이 우선 완납〉 계좌입금 규정준수 (현금 지출 불가)
지원금 지급	6. 지급신청서 제출 (선정기업)	- 지원금 신청서(지출증빙 포함) 등 관련서류 제출 - 현장확인 (IBITP)
	7. 지원금 지급 (IBITP → 신청기업)	-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체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 : 청년 신규채용(정규직)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

구분	H 용
十七	게 ㅎ
신 규 채 용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인천 거주 청년을 2명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인정범위(예시) : 신청일(2018.6.3.), 실적인정(2017.6.3.~2018.6.3.) • 청년 채용은 신청일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는 자이며,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를 말함 • 중소기업의 경우 2명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10명 초과 청년신규채용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만 15세~39세 채용 실적 인정. * 만15세~만39세 (2002.01.01. ~ 1979.12.31. 범위에 출생한 자로 한정) • 신청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함.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친인척 관계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하는 청년은 채용실적에서 제외 • 임차건물의 경우 참여 기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물주가 직접 신청 가능.
소 재 지	 (기업)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신청일 현재) (청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채용일 기준) *채용시점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여부 확인 * 과거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 채용 당시 주민등록 상 거주지는 관외였으나, 인천으로 전입 신고 후 기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인천에 거주 했을 경우 인정. * 청년의 주소지는,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된 과거 주소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으로 인정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추가 제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친인척 관계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하는 청년은 채용실적에서 제외
기업 규모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1년간 평균) - 중견기업의 경우 청년 10명 초과 채용시 지원 가능

○ 지원 규모 및 내용 : 청년 채용인원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걘	내 용			
지 원 규 모	10인이하	지원금액 10백만원 이내 지원 20백만원 이내 지원 30백만원 이내 지원 40백만원 이내 지원		
지 원 내 용	■ : • 시석석치 및 묵포 구인 지워으 시포마 지워히	축은 지원 가능 정기, 커피머신, 기숙사 가구 등 50%를 초과할 수 없음 금 외 추가비용은 기업체 부담) 다 총 지원금의 50%를 초과 병행하여 진행 될 경우 총 수 없음. 어 및 증·개축은 지원 가능함.		

○ 기업 규모 및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	, = ,, ,,	110 1	_		<u></u>			
걘	내용							
	<공장등록기업>							
제	공장등록증명원	·명원 제출						
조	<공장 미 등록 제	<공장 미등록 제조기업>						
업	제조시설 면적이 500m²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증빙 가능.							
	*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된 용도가 제조용도 이어야 함							
	<업 종증 빙자료 (표준산입	d 는	분류 분류번호) 참고	고>			
	해당 등록증 또	는 허가	증	제출				
	업종명	분류 번호		업종명	분류 번호	업종명	분류 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1	
	해상운송업	501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화물 취급업	5294		모바일게임소프트웨 어개발 및 공급업	58212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제 조 관 련 서 비 스 업	창고업	5210		기타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물류터미널 운영업	52913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환경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3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제품 디자인업	73202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639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120	시각 디자인업	73203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데이터베이및온라인 정보 제공(다만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991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ㅂ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900 9		농학 연구개발업	70112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폐기물 처리업	38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폐수 처리업	37012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2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포장 및 충전업	75994						
기	<임대건물> 지원가	능 (임다	치	계약서, 사업추진 등	동의서 제	출)		
타	<공동입주건물의 공	'동 시설'	> -	공동발의 가능 (공동	불의 동의	기서 제출)		

○ 우대기업 구분

참여기업 가점사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청년친화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천시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희망이음 지역 중소·중견기업 참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석5조 청년프로젝트 참여기업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기업 활동과 관련 시장 및 장관 이상 표창 수상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대상, 기업인대상, 벤처기업대상, 품질경영대회 등)			
• 최근 3년 이내 수상인정.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항일 시 각각의 범위 인정 (※ 유효기간 內)				
• 각 해당사항의 수에 따른 가산점 산출				
- 3개 이상 해당- 5점, 2개 이상 해당- 4점, 1개 이상 해당- 3점				

○ 신청절차

1.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 bizok.incheon.go.kr

2. 회원기입 및 기업정보 등록

- 파일 업로드 및 정보입력

3. 온라인 신청

- 서류 업로드

- 참여신청 및 계획서
- 견적서 및 관련 증빙서류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증빙서류 등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청년 고용창출 증빙서류
-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
- 그 외 내용 별 요청서류

4. 서류보완/재신청

- 담당자 안내에 따른 보완서류 업로드. 3일 초과시 전체 재신청

5. 지원결정/통보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위원평가 후 결정시항 개별통보

○ 제출서류 목록

No	제 출 서 류 목 록
1	「2018년 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참여 신청 및 계획서 「서식1」
	견적서 및 관련 증빙서류
2	① 시설 개보수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내역 (단가계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
	② 물품구입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카달로그 등
	*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동시 지원할 시 위의 모든 사항을 충족
3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서식2」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증빙서류 등
	①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 미등 시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 ② 제조관련 서비스업
4	- 업종증빙서류
	임대건물 및 공동발의 제출서류 (※ 필요시 추가서류제출)
	① 임대 건물
	- 임대건물 공장등록증명서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 2018년「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사업추진 동의서 「서식3」
	② 공동 입주 건물의 입주 기업 공동발의
	- 2018년「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공동발의 동의서 「서식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17년 01월 02일 기준, 신청일 이전 1년 기준, 2018년 신청일 기준 각 1부 -신청일
5	7일 이내 발급분)
J	예시 : 신청일이 06월 05일인 경우 -
	① 2017년 01월 02일 기준 ② 2017년 06월05일 기준 ③ 2018년 06월 05일 기준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Ü	청년 고용창출 증빙서류
7	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청년) 「 서식5 」
	③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0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 (증명서류 제출-가점사항)
8	(최근 3년, 일자리 및 청년관련 수상 인정, 기타 인증기업 등)
9	그 외 신청 내용 별 접수기간 요청서류

○ 제출서류 상세내용

	제출서류 상세내용
1.참여신청서	세술시뉴 경세네용 ● 기업정보 및 지원자격 관련사항 확인.
1.6112011	①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기대 효과 상세하게 기재 (필요시 칸 추가하여 작성.페이지 수 제한 없음) ② 약식도면은 시설 개보수 및 물품 설치 장소를 알아보기 위함으로, 평면도와 비슷한 형태로 약도화하여 제출 (간단한 수기작성 가능)
2.참여계획서	③ 시설 개보수의 경우 단가 계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 세부 내역이 명시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제출 ④ 물품구입의 경우 물품 카달로그 및 사진이 포함된 견적서, 비교 견적서 각 1부 제출 ⑤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을 동시 신청할 경우 모두를 제출하여야 함.
3.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음.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청념 이행 및 사업참여 확약, 제외기업 해당여부 ② 위 사항에 동의ㆍ협조ㆍ확약ㆍ확인하지 않을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사업자 등록증-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확인
4. 사업자 등록증 및 업 종증 빙서류 등	 ② 제조업-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③ 공장미등록 기업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 경우) ④ 건축물 관리대장 사본 제출(용도가 공장, 제조 등으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함. ⑤ 기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평시 기업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④ 임대건물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사업추진동의서 제출 ⑤ 공동입주 건물일 경우 대표참여기업이 공동발의 진행 가능. - 공동발의 동의서 제출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① 신청일 기준 7일이내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2017년 1월 2일기준(공통사항), 신청일 이전 1년 날짜 기준, 신청일기준 각 1부 ② 근속 여부를 확인하여 지난 6개월간 동일기업에 재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함. ③ 신청일 현재 재직중이여야 하며 재직일수는 무관함. ④ 사업선정 전 청년의 퇴사로 채용실적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때 까지 그 신청을 유보함.

- ④ 기업은 청년의 퇴사를 사업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청년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면 일시적 유보되어 있는 선정과정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⑤ 신규 채용한 청년의 4대 사회보험 가입서류 및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재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함.
- ◎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는 동안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지 못 할 수 있음.
- ① 선정이전 퇴사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사업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이 추후 밝혀졌을 경우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함.
-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① 근로계약서
-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청년)「서식5」
- 7. 청년 고용창출 증빙 서류
-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주소지 및 근로계약서 확인사항
- B) 위 사항에 동의 · 협조 · 확약 · 확인하지 않을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③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은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8.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 (증명 서류제출-가점사항) 참여기업 가점사항 확인
- 9. 그 외 신청 내용 별 접수기간 요청서류

○ 제외기업

- O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O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 기업
- O 동종업체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등 심의위원 다수가 선정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O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노동행위, 4대보험 등 기본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 O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및 유사한 지원을 받은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 단,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경과된 기간과 상관이 지원 가능
- O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O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 O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 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운영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유의사항

- O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1년간 동 사업 및 관리 기관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동일 사업으로 3년 이내 중복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업비 전액을 환수함. -10백만원 이하 제외
-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3년간 동일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O 허위로 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을 환수함.
- O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친인척 관계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하는 청년은 채용실적에서 제외
- O 서류 제출은 총 2회로 사업신청, 지원금 신청
-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화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원금 지출여부 판단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O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O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변경시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변경 시 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 이상으로 상향되지 않음. 단, 변경 이유가 타당하며 최대 지원금 미만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예산 잔액에 따라 최대 지원금까지 변경 가능
- 지원포기의 경우 지원사업포기신청서 제출
- O 시공·제작업체 선정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시공 및 물품구입 업체는 선정 불가
- 전자 세금계산서 미대상은 수기 세금계산서와 기타 시공업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O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 후 지원금 지급 할 수 있음
- O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 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지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시 향후 재지원 불가